
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
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2. 23.

발의자 : 조은희 · 박정하 · 최승재

박성민 · 김상훈 · 한무경

신원식 · 이태규 · 정경희
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「행정기본법」이 제정(법률 제17979호, 2021. 3. 23. 공포, 2021. 3. 23. 및 2023. 3. 24. 시행)됨에 따라, 「행정기본법」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, 「행정기본법」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,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여성가족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.
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의3(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특례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 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제2조(「청소년 보호법」의 개정)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3조(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의 개정)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신고를”을 “신고(이하 이 조에서 “허가·인가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허가·인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·인가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보를”을 “통보(이하 이 조에서 “신고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등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3항에 따라 협의한”을 “신고등의 관계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허가·인가등 또는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

의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허가 · 인가등의 협의기간: 20일

2. 신고등의 협의기간: 10일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· 인가등 및 신고등 의제의 기준 · 효과 등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”로, “지정”을 “지정(이하 이 조에서 “허가 · 면허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특별자치 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허가 · 면허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· 면허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· 면허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

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관한 적용

례)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.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의3(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14조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 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 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의3(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특례) ① 이행관리원 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 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 례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 다.</p>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4조(과징금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</u></p> <p><u>2.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</u></p> <p><u>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</u></p> <p>⑥ · ⑦ (생 략)</p>	<p>제54조(과징금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· ⑦ (현행과 같음)</p>
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·인가·해제·지정 또는 <u>신고</u>를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②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<u>통보</u>를 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33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신고</u> <u>(이하 이 조에서 “허가·인가 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허가·인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·인가등을 -----.</u>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보</u>(<u>이하 이 조에서 “신고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등을 -----.</u></p>

1. ~ 3. (생략)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52조제2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협의 기간: 20일

2.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: 10일

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허가·인가등 또는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허가·인가등의 협의기간: 20일

2. 신고등의 협의기간: 10일
<삭 제>
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52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·인가·면허·해제·신고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⑤ -----

신고등의 관계 -----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·인가 등 및 신고등 의제의 기준·효과 등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52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) ① -----

--- 경우 -----

---- 지정(이하 이 조에서 “허가·면허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허가·면허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

	<p><u>대해서는 해당 허가·면허등--</u></p> <p>~.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·면허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<삭 제></p>
1. ~ 14. (생략) ② (생략) <u>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u>	